

2023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(안) 검토보고

(기획재정국 소관)

2022. 11. 23.
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○ 2023. 11.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도 예산	증(△)감	
			금액	비율(%)
세입	477,956,006	429,648,779	48,307,227	11.24
세출	76,205,557	56,208,901	19,996,656	35.58

3. 세입현황(부서별 현황)

구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도 예산	증(△)감	
			금액	비율(%)
계	477,956,006	429,648,779	48,307,227	11.24
기획예산과	233,456,272	221,021,457	12,434,815	5.63
재무과	88,718,771	70,698,437	18,020,334	25.49
주민공동체과	650,549	220,909	429,640	194.49
세무1과	152,403,472	134,983,742	17,419,730	12.91
세무2과	2,568,424	2,589,354	△20,930	△0.81
지적과	158,518	134,880	23,638	17.53

□ 세입 검토의견

-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, 금년대비 11.24%(483억722만원) 증가한 4,779억5,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- 기획예산과는 금년대비 5.63%(124억3,481만원) 증가한 2,334억5,627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 -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이자 수입으로 636만원 감액된 3억2,727만원,
 - 임시적세외수입으로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 등 4,000만원 증액된 8,000만원,
 - 부동산교부세로 46억9,200만원이 감액된 223억4,100만원,
 - 자치구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70억9317만원이 증액된 2,106억1,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.
- 재무과는 금년대비 25.49%(180억2,033만원) 증액된 887억1,877만원으로,
 -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1,709만원, 증지수입 6억4,566만원, 기타수수료 수입 3,000만원, 공공예금 이자수입 31억2,000만원,
 -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으로 장위6구역 정비구역 시·구유지 등으로 62억9,401만원 증액된 86억5,036만원,
 - 구금고 협력사업비 10억100만원,
 - 공유재산 변상금 1억4,564만원,
 -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이 증액된 75억원 등임.

- 주민공동체과는 금년대비 194.49%(4억2,964만원) 증액된 6억5,054만원으로,
 - 공유재산임대료 1,534만원,
 -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, 사회보험료 지원,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구시비보조금으로 4억2,861만원 증액된 6억3,520만원 등임.

- 세무1과는 금년대비 12.91%(174억1,973만원) 증액된 1,524억347만원으로,
 - 지방세수입(등록면허세, 재산세, 지난해도수입)으로 186억5,647만원 증액된 1,362억5,232만원,
 -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3,108만원 감액된 120억2,850만원,
 - 지난해도 수입은 1억2,619만원 증액된 29억1,069만원,
 -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재정보전금 11억3,320만원,
 - 주택가격 조사결정 국고보조금 7,875만원 등임.

- 세무2과는 금년대비 $\Delta 0.81\%$ ($\Delta 2,093$ 만원) 감액된 25억6,842만원으로,
 - 등록면허세 19억3,288만원,
 - 지난해도 수입 6억1,327만원,
 -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2,226만원 등임.

- 지적과는 금년대비 17.53%(2,363만원) 증액된 1억5,851만원으로,
 - 종암동 지구(조정금) 분할 납부금 2,000만원,
 -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,000만원,
 -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2,250만원,
 - 1인가구 전·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시비보조금 2,4960만원임.

■ 세출현황

□ 부서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3년 예산(안)	2022년도 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76,205,557	56,208,901	19,996,656	35.58
기 획 예 산 과	71,275,360	52,349,616	18,925,744	36.15
재 무 과	604,613	564,502	40,111	7.11
주 민 공 동 체 과	2,630,447	1,711,540	918,907	53.69
세 무 1 과	746,693	665,393	81,300	12.22
세 무 2 과	578,507	606,317	△27,810	△4.59
지 적 과	369,937	311,533	58,404	18.75

□ 세출 검토의견

○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, 금년대비 35.58%(199억9,665만원) 증액된 762억5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○ 기획예산과는 금년대비 36.15%(189억2,574만원) 증액된 712억7,536만원으로,

▪ 주요 신규사업으로는

-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6,000만원,
- 성북문화재단 경영사업위탁 140억7,071만원,
- 연구용역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 1억원,
-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중 민간기록물 공모전 시상금 300만원이며,

▪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
-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위탁으로 9억7,215만원 증액된 154억9,592만원,
-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,241만원 증액된 6,504만원,
- 예비비로 8억6,826만원 증액된 95억2,705만원,
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로 11억4,849만원 증액된 86억796만원,
-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52억원이 증액된 140억원 등임.

▪ 주요 감액사업으로는,

-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1,240만원 감액된 1,430만원,
-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 6,117만원 감액된 6,441만원,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7억 감액된 65억원 등임.

▪ 기획예산과 기금

-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¹⁾(1995년 설치) : 2023년도 말 조성

1) 제13조(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)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 시설, 공공체육시설, 주민편의시설 등(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5.14.)

1. 일반회계 전입금 (구세 및 세외수입의 1% 이상) (개정 2017.12.28, 2020.5.14, 2020.12.31.)
2. 교부금 및 보조금 (개정 2020.5.14.)
3. 삭제 (2017.12.28.)
4. 기금운용 수익금 (개정 2020.5.14.)
5. 그 밖의 수입금 (개정 2020.5.14.)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5.14.)

1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 포함) 경비 (개정 2020.5.14.)
2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(개정 2020.5.14.)
3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(신설 2020.5.14.)

액은 금년대비 4.51%(41억1,816만원) 증액된 955억1,516만원,

- **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²⁾(2020년 설치) : 2023년도 말 조성액은**

4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(신설 2020.5.14.)
5.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 (신설 2020.5.14.)

2)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제7조(설치 및 운용) 구청장은 **기본법 제16조**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20.12.31.]

제8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3.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3.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

금년대비 143.98%(29억5,869만원) 증액된 50억1,369만원,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³⁾(2020년 설치) :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대비 24.13%(73억4,937만원) 증액된 304억6,000만원임.

○ 재무과는 금년대비 7.11%(4,011만원) 증액된 6억461만원으로,

- 신규 사업은 없으며
- 주요 증액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4,713만원 증액된 3억7,015만원(건물시설물 재해보험료 1억8,187만원,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 1억8,382만원)이며,

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6. 9.]

3) 제9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4.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
2.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

-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 - 물품의 안정적 수급관리로 1,074만원 감액된 1,810만원,
 - 행정운영경비로 663만원이 감액된 1,465만원으로 편성됨.

○ 주민공동체과는 금년대비 53.69%(9억1,890만원) 증액된 26억3,044만원으로,

- 주요 신규사업으로는
 -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8,752만원(국 2억9,064만원, 시 6,781만원, 구 2,906만원),
 -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7,756만원(국 5,817만원, 시 1,357만원, 구 581만원),
 -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억1,430만원(국 8,001만원, 시 2,400만원, 구1,028만원),
 -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으로 5억5,500만원,
 -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1인 미디어실 과 편집실 조성으로 2,200만원 등이며,
-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 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억718만원 감액된 9,207만원(국 2,685만원, 시2,912만원, 구1,028만원),
 -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1억970만원 감액된 2억3,833만원,
 - 공유도시 추진 중 공구대여소 물품 구입비로 2,000만원 감액된 200만원 등임.
- 주민공동체과 기금
 - 사회투자기금⁴⁾(2015년 설치) :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대비 △

4) 제27조(사회투자기금) ①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회투자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31.)

0.92%(△683만원) 감액된 7억4,662만원임.

○ 세무1과는 금년대비 12.22%(8,130만원) 증액된 6억6,539만원으로,

- 크게 감액되거나 신규 사업은 없으며,
- 주요 증액 사업으로
 -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로 2,388만원 증액된 3억386만원,
 - 주택가격조사결정 일반운영비로 6,5859만원 증액된 1억7,583만원(국 7,875만원, 구 9,708만원) 등이 편성되었음.
- 감액 사업으로는
 - 세외수입 징수활동 포상금으로 954만원이 감액된 6,088만원 등임.

○ 세무2과는 금년대비 △4.59%(△2,7810만원) 감액된 5억7,850만원으로,

-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
 -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2,160만원 감액된 2억5,740만원이며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 및 신규 예산은 없음.

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전입금 (개정 2020.12.31.)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3. 용자상환금, 차입금, 예수금, 투자회수금 등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
2.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
3.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
4.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
5.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6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비 등

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(개정 2020.12.31.) [본조 신설 2015.9.30]

- 지적과는 금년대비 18.75%(5,840만원) 증액된 3억6,993만원으로,
 - 신규 사업으로
 - 1인가구 전·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으로 2,5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,
 -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 - 도로명주소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,324만원 증액된 7,640만원,
 - 공정한 부동산거래 관리로 590만원 증액된 2,903만원이며,
 -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 -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비로 1,626만원 감액된 1억2,120만원 등임.

-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⁵⁾와 지방재정법 제36조,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